

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적용 대상 안내

□ (비수도권 지역인재 정의)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(지방 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·제적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 범위

○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
※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 해당 여부는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 후,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분교 해당 여부 예시
○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함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
○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
○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-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
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○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
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○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 - 대학에 입학 후 중퇴·제적한 경우에는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, 해당 대학의 소재지 및 지방대학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○ 유의사항

-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입력하는 등 관련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 무효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